업무정지등처분취소

[대구지방법원 2023. 6. 22. 2022구합20671]



【전문】

- 【원 고】주식회사 ○○○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구본덕 외 1인)
- 【피 고】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국제 담당변호사 배성현)
- 【변론종결】2023. 4. 6.

【주문】

]

-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】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. 2. 14. 의료기기 '의료용온열기(제조인증번호 생략)' 품목 제조인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.

[이유]

- 】1. 처분의 경위 및 내용
- 가. 원고는 가정용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. 3. 22.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으로부터 개인용 온열기 제품 모델명 (모델명 1 생략) 외 2건((모델명 2 생략), (모델명 3 생략))에 대하여 품목 (제조인증번호 생략)(이하 '이 사건 품목'이라 한다)로 의료기기 제조인증(이하 '이 사건 제조인증'이라 한다)을 취득하였다.
- 나.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수시감사 중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. 8. 31. 이 사건 품목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1개월(2021. 9. 10.부터 2021. 10. 9.까지)의 처분을 하였다.
- 의료기기법 제20조 제4호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제조번호와 제조연원을 적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, 동 업체는 해당제품((제조인증번호 생략), 모델명: (모델명 1 생략))을 의료기기 판매업체 '○○○(의료기기 판매업: (신고번호 생략), 2021. 3. 5.,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)'에 판매 시 제조번호가 누락되어 판매된 사실이 있음

다.

- 피고는 이후 원고가 위 판매업무정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기간에 이 사건 품목 중 모델명 (모델명 2 생략) 제품 146개, 모델명 (모델명 3 생략) 제품 28개, 합계 174개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, 의료기기법 제36조,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제58조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π. 개별기준 제36호에 따라 이 사건 제조인증 취소처분(이하 '이 사건 취소처분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-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5, 10, 1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- 2. 관계 법령
 -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.
- 3. 원고의 주장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가. 처분사유 부존재

- 1) 원고는 판매업무정지처분 대상을 모델명 (모델명 1 생략)에 한정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모델명 (모델명 2 생략), (모델명 3 생략) 제품을 판매한 것인바, 원고의 판매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.
- 2)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,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일반기준 2. 가.항에 의하면, 품목이 다른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판매업무정지처분 대상은 모델명 (모델명 1 생략)에 불과하므로, 이와 별 개의 품목인 모델명 (모델명 2 생략), (모델명 3 생략)에 대하여까지 제조인증취소 처분을 한 것은 처분사유가 부존 재하여 부적법하다.

나. 재량권 일탈·남용

- 1) 피고는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도 있음에도 그보다 중한 제조인증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위법이 있다(이하 '처분기준 관련 주장'이라 한다).
- 2) 원고의 판매행위는 착오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,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,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사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위법이 있다(이하 '비례원칙 위반' 주장이라 한다).

4. 판단

가. 처분사유 존재 여부

- 1) 앞에서 든 증거,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, 즉 의료기기법 제6조 제 1항, 제2항은 의료기기의 제조인증은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, 원고의 개인온열기 (제조인증번호 생략)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인증서에 모델명 (모델명 1 생략)외 2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(모델명 2 생략)와 (모델명 3 생략) 모두에 대하여 '개인용온열기'라는 동일한 품목으로 제조인증을 받은 점, 원고는 2018. 7. 10. 의료용진동기(제조인증번호 2 생략) 품질부적합에 따른 15일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, 위 제조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해당 품목의 모든 모델 제조를 중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판매업무정지처분이 제품의 모델이 아닌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.
-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(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조), 원고가 판매업무정지처분 대상이 이 사건 품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델명 (모델명 1 생략)에 한하는 것이라고 착오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의료기기법 제3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[별표 8] I. 일반기준 제2의 가.항은 '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(가중처분)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표. 개별기준의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다만, 품목이 다를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'고 규정하고, 같은 일반기준 제4항은 '행정처분의 기준 중 그위반사항이 허가·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개별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허가·인증·신고 또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'고 규정하고 있는바, 의료기기의 제조인증 및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품목 단위로 이루어진다.
-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앞서 보았듯이 (모델명 1 생략), (모델명 2 생략), (모델명 3 생략) 제품은 '개인용온열기'라는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조절부의 조작에 의하여 온열기에 발생하는 열을 인체에 가함으로써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기기라는 점에서 동일하고, 다만 (모델명 1 생략)은 벨크로 허리보조띠, (모델명 2 생략)는 복부 뜸질기(가로 780mm, 세로 405mm), (모델명 3 생략)은 복부 뜸질기(가로 535mm, 세로 400mm)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 점,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서에는 처분사항에 '(제조인증번호 생략) 품목'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사건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기간에 (모델명 2 생략), (모델명 3 생략) 제품을 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24호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재량권 일탈·남용 여부

- 1) 처분기준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, 의료기기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[별표 8] 표. 개별기준에 의하면,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등에 대해서 제품 및 수입허가·인증취소 또는 제조업·수입업 허가취소 또는 수리업소·영업소 폐쇄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, 업무정지 처분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- 2)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,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 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0. 4. 7.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).
-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,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,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,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(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).
-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, 이사건 취소처분에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- ①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[별표 8] 행정처분의 기준 II. 개별기준 제36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, 위 처분기준은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료기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.
- ② 원고는 모델명 (모델명 1 생략)에 대하여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였고, (모델명 2 생략), (모델명 3 생략) 제품을 판매한 기간은 2021. 9. 10.부터 2021. 10. 9.까지 1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기는 하나, 위 기간 동안 (모델명 2 생략), (모델명 3 생략) 제품의 합계 매출액은 41,297,340원{= (모델명 2 생략) 판매량 146개 × 단가 238,700원(2021년 8월 기준 추정 금액, 이하 같다) + (모델명 3 생략) 판매량 28개 × 단가 230,255원}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, 이는 2021년 8월 기준 이 사건 품목 전체의 월 매출액 196,973,600원의 약 21%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.
- ③ 이 사건 품목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나, 의료기기법이 의료기기를 제조시설 및 제조시기별로 구별하여 특정하고 제조번호 등을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할 것을 규정한 것은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통하여 의료기기 품질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·검증함과 동시에 의료기기가 유통된 이후에도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품을 신속하게 추적·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, 원고의 제조번호 기입 위반 행위 및 이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처분을 재차 위반한 행위의 위법성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,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판매업무정지처분이 이 사건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(모델명 2 생략), (모델명 3 생략) 제품의 판매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.
 - ④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전체를 제조·판매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기는 하나,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가 입게 될 재산상 손해보다 적다고 보기 어렵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[별지 생략]

판사 신헌석(재판장) 김은혜 김준철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